
2023년 9월부터 달라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FAQ

2023. 09.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 법적근거 및 대상 공공기관 >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1
2.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1

<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3. 관련 규정 개정 후, 기존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
4.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3
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및 제외 대상 차량은? 3
6. 공용차량은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5
7.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5
8. 장거리 출퇴근의 판단기준은? 6
9.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6
10.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이 가능한지? 6

< 대상차량 적용범위 >

1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해당 임직원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7
1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7
13.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을 받는지? 8
14.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민간이 임차한 경우 민간 차량도 승용차 요일제 대상인지? 민간 기관에 임차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차량도 승용차 요일제 대상인지? 8

< 기 타 >

15.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9
16. 선택요일제와 끝번호요일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지? 9
17. 선택요일제 식별 스티커는 어떻게 제작해야 하고 식별스티커 및 제외증명서 부착 위치는? 10
18. 승용차 마일리지제, 승용차 요일제 등을 도입한 지자체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요일제 적용은? 10
19.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요일제 전일에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 11
20. 승용차 요일제 점검방법과 위반 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11

< 법적근거 및 대상 공공기관 >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법적근거는?

<답 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산업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 '00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종합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최초시행
 - * '11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하며 승용차요일제 반영
- '20.2.23.,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중지한 바 있으며,
- '23.6.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요일제 계도기간('23.6~8월) 부여 및 보완방안 마련 결정
- '23.8.30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후, 9.1.부터 재시행 예정

2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답 변>

-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3	관련 규정 개정 후, 기존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	------------------------------------

<답 변>

- 공공기관 근무자의 불편,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의 합리성을 도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 시행하되,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요일제 실시여부, 제외대상 차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을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 범위 확대(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구 분	시행여부	제외 대상 차량
인구 50만 이상	의무시행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국가유공차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①~③ 상동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⑤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인구 30만 미만	위원회 결정	시행할 경우 ①~⑦ 상동

4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

<답 변>

-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조사 통계(최신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의 인구 수를 확인
-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 → 전수부문(전수기본표)
 - * 공공기관 소재지(본·지사 별도)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일 경우 서울시 인구수 적용, 경남 함양군의 경우 함양군 인구수 적용

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및 제외 대상 차량은?
---	------------------------------

<답 변>

- 개정된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만을 대상으로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
 -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의 증명서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발급대장은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함

< 제외 차량 >

	구 분	상세내용	확인사항	비고
1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경형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 해당 증명서 등	전체 공공기관

구 분	상세내용	확인사항	비고
2	환경친화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증명서 등 	전체 공공기관
3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를 소지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증명서 등 	
4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장애인 동승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 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증명서 등 	
5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 임신사실 (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 확인 유아 :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6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E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증명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 	
7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에 입지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증명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 	50만명 미만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
8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9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10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6 공용차량은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답 변>

- 공공기관 업무용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업무 비효율성 및 불편초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출장이 많은 공공기관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장 직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제외하였음

7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답 변>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
-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하며, 통근버스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8 장거리 출퇴근의 판단기준은?

<답 변>

-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답 변>

-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06:00 이전까지 근무지에 출근 및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가 해당됨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0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승용차요일제 제외대상이 가능한지?

<답 변>

-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은 원칙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제외대상이 아님
- 다만, 동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

< 대상차량 적용범위 >

1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해당 임직원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	---

<답 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은 요일제 제외대상임
 - 다만, 운전자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행목적은 공공기관별로 확인 후 제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을 출근길에 근로목적 등 함께 동승하는 경우는 제외가능

1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	---

<답 변>

-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전기차,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가 해당
-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용차요일제 적용 차량임

13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을 받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됨
 -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4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민간이 임차한 경우, 민간차량도 승용차 요일제 대상인지? 민간기관에 임차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차량도 승용차 요일제 대상인지?
----	---

<답 변>

-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차량은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해당 청사의 임차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 기 타 >

1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	--------------------------------------

<답 변>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취지,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제외 차량, 점검방안, 홍보·카풀 활성화 등 독려방안, 인센티브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선택요일제와 끝번호요일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지?
----	-----------------------------

<답 변>

공공기관 임직원은 선택요일제와 끝번호요일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함

○ 다만,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운휴를 선택한 요일을 차량에 표시하기 위하여 운전석 전면의 유리창에 선택한 요일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끝번호요일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 (예시 : 스티커 부착)

- 차량 끝번호가 2번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운휴를 선택(선택요일제)한 차량은 목요일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

- 차량 끝번호가 2번으로 화요일에 운휴하는 경우(끝번호요일제)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부착할 필요 없음

17 선택요일제 식별 스티커는 어떻게 제작해야 하고 식별 스티커 및 제외증명서 부착 위치는?

<답 변>

-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부착하여야 함.
 -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함
 -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cm)
- 선택요일제 식별 스티커 및 제외증명서는 차량 전면의 유리창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함

18 승용차 마일리지제, 승용차 요일제 등을 도입한 지자체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요일제 적용은?

<답 변>

- 지자체가 시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임
 - *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로써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적용과는 관련없음

19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요일제 전일에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
----	---

<답 변>

-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전일에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요일제 담당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일 주차차량 확인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20	승용차 요일제 점검방법과 위반 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	-------------------------------

<답 변>

- 승용차 요일제 점검 방식 및 위반 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자체 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사안임
- 요일제 성실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관별로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홍보 등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준수를 독려하고,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